

19세기 충청도 양반 가문의 입후(入後) 사례연구*

- 경주김씨 학주공파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

이대화**

〈차 례〉

1. 머리말
2. 장자 입후 문제에 관련된 인식
3. 호구단자로 살펴본 입후의 양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래 조선의 법제상 입후는 적자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울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들어 조선 양반계층에서 적서차별 관념이 강화되면서, 이미 첩에게서 아들을 두었는데도 같은 문종의 적자를 양자로 입후하거나, 심지어 만아들을 입후로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경국대전』의 조문에 어긋나는 만큼, 국왕의 특지에 의해 허가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특례를 얻으려면 해당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기호지역 명문가 중 하나였던 경주김씨 학주공파 소장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18-19세기 입후에 관한 사례를 검토했다.

이 가문 역시 당시 여러 집안의 사례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입후하거나 장자를 입후하는 등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장자 입후 사례를 통해, 양가와 생가 사이의 갈등 요소가 잠재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첩자의 가계계승도 입후와 더불어 가계 단절을 막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구단자와 족보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입후에 있어서 사후의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가까운 촌수(친조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임 (AKSR2021-J03).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카)에서 입후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즉 입후와 같은 조선 후기 가족관습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리라 하겠다.

[주제어] 입후, 양자, 가족관습, 가계계승, 호구단자

1. 머리말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이후는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로 여겨진다. 윤희봉사나 균분상속과 같은 고려시대의 관습에서 서서히 벗어나, 적장자 중심의 4대봉사가 확립되고 문중이 형성되면서 종통(宗統)을 계승한다는 의식이 확고해졌다. 하지만 계승자인 아들을 얻지 못하여 가계가 단절될 위험성은 상존하였기 때문에, 후계자를 데려오는 ‘입후(入後)’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래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입후」 규정에 의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로 삼는다. 두 집의 아버지가 함께 명령하여 양자를 세우되,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관(官)에 고(告)한다. 존속(尊屬)과 형제(兄弟) 및 손(孫) 등의 항렬에서는 서로 양자가 될 수 없다¹⁾고 하였다. 즉 적자도 서자도 두지 못한 경우에 한해, 입후자를 보낼 생가(生家)와 입후자를 받을 양가(養家) 모두의 동의를 받고 관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입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부터 적서차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봉사(封祀)」 규정에서는 ‘만약 적장자에게 자손이 없으면 중자(衆子)가 제사를 받들고, 중자에게도 자손이 없으면 첩자(妾子)가 제사를 받든다. 적장자가 단지 첩자만 있어서, 동생의 아들로서 뒤를 잇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들어준다. 또 자신이 첩자와 더불어 별도로 한 지파(支派)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들어준다²⁾고 하여 서

1) 『경국대전』, 「禮典」 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同命立之, 父沒則 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2) 『경국대전』, 「禮典」 封祀條. “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 聽. 欲自與妾子, 別位一支則, 亦聽.”

자, 즉 첩자가 가문의 제사권을 승계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을 두었다. 16세기에 이르면, 차자에게 계승되는 대신 입후에 의해 종가의 적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³⁾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에는 입후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사회와 가족관행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양자 관념으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고문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디지털화가 진척됨에 따라 자료의 접근이 이전보다 수월해지면서 각 가문에 분산되어 있던 입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성과가 다수 발표되었다. 권내현은 호적과 족보 자료의 비교를 통해 입후가 계층적으로 확산되는 양상과 시기, 입후자의 생가와 양가 사이의 범위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⁴⁾ 한상우는 『계후등록(繼後謄錄)』과 여러 가문의 족보를 비교 연구하여, 입후가 단순히 종법제도의 실천이라는 의례적·이념적 요인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밝혔다.⁵⁾ 또한 고민정은 종법질서가 보편화된 17세기 이후의 입후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토대로, 입후의 절차와 방법, 관련 법제와 관념의 변화와 과제, 첩자의 가계 계승에 이르는 종합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⁶⁾ 이외에도 17세기 이후 서얼, 즉 첩자의 종법적 지위⁷⁾와 입후를 철회하는 과계를 둘러싼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

3)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51쪽.

4)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5)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입후 양상과 전략적 계자 선택 - 안동김씨 문정공파, 연안이씨 관동파, 진성이씨 퇴계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계후등록』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6) 고민정,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14;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한국사학회, 2015;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계후입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7) 한기범, 「17세기 서얼의 종법적 지위」,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2; 허원영, 「한말 한중가의 입후(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박경, 「과계(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 입후법 운용 - 장서각 소장 『계후등록』을 중심으로」,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는 법제와 실제 입후 양상의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고 그에 입각하여 경향성이 밝혀졌지만,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전근대시기에는 시기별, 지역별, 가문별 사례를 새롭게 발굴하여 축적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입후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듯이 『경국대전』이 완성된 15세기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조선후기에 달라진 입후 관행은 국왕의 특지(特旨)를 얻어 법적 정당성을 얻어야 했는데, 장자 입후나 서자가 있는데도 입후를 하는 경우에는 입후를 신청한 집안의 사회적 위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입후를 둘러싸고 가문 내외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경주김씨(慶州金氏) 학주공파(鶴洲公派) 소장 고문서 자료 가운데 입후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경주김씨 학주공파는 충청도 서산 일대에 세거하면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 1745~1805)의 친척으로 영조대 이후 유력 가문으로 위세를 떨쳤다. 현재 남아 있는 학주공파 소장 고문서 자료 가운데에는 입후에 관한 상소문 초고와 계후입안, 호구단자 등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해당 자료와 족보를 비교 검토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선후기 입후 양상과 경주김씨 학주공파 가문의 입후 사례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입후 사례 검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차적으로 관련 자료의 시기 비정 및 기왕의 자료해제 내용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장자 입후 문제에 관련된 인식

입후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하면, 입후 대상자로 가장 선호하는 관계는 형제의 중자, 즉 친조카였다. 이때 첩자는 당연히 제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국대전』에서조차 첩자는 친부모의 가계를 계승하는 데도 일정

한 조건이 붙었다.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서자에 의한 계승은 가계(家格)이 떨어진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실제 관행에서도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기보다는 적자를 입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⁸⁾ 입후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형제의 아들을 입후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당내친, 즉 4촌-8촌 형제의 아들을 입후하였다. 18~19세기로 내려올수록 생부와 양부의 촌수가 8촌을 넘어 20촌 이상으로 멀어지는 사례가 늘어나지만, 현재까지 분석된 입후 관련 자료에서는 80% 가량이 8촌 이내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⁹⁾

형제나 당내친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먼 친척은 사실상 남남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형제와 당내친은 기제사를 비롯한 각종 집안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기에 입후 이후 가계계승에 대해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밀감도 높았다. 그리고 입후한 집안의 재산상속이라는 현실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먼 친척 집안에서 입후자를 들일 경우, 문중의 운영과 문중재산 상속 등에서 가까운 친척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충분했다.¹⁰⁾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면 입후 대상자의 인망과 평판 등도 중요한데, 이 또한 문중 행사에서 꾸준히 접촉하며 다른 친척들의 의견을 토대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당내친 이내(양부와 생부의 촌수 8촌, 양부와 입후자의 촌수는 3촌~9촌이 된다)의 범위에서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본래 장자는 가문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을 이을 수 없다고 보아 계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7세기 이후 타인의 장자를 통한 입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¹¹⁾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요인은 종법이 보편화되면서

8)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48쪽.

9) 권내현, 위의 논문, 62쪽;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입후 양상과 전략적 계자 선택 - 안동김씨 문정공파, 연안이씨 관동파, 진성이씨 퇴계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298쪽.

10)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입후(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참고.

11) 고민정,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3, 291~293쪽.

종가의 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문중집단의 범위가 확장되고, 문중 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이 생겨났다. 위토를 공동으로 마련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창출하고 종계나 문계를 결성하며, 재실과 사우, 서원 등을 지어 위세를 과시하며 문중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입후 사례에서는 단순히 촌수와 종가 여부만으로 입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입후 대상자가 있더라도 생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양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입후가 쉽지 않았다. 자기 자식이 생가보다 못한 집안으로 입후하는데 동의할 친부모가 많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거꾸로 양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우월하다면, 마음에 드는 입후자를 데려오기 수월했다. 촌수가 비록 멀다 하더라도, 학문에 재능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더 뛰어난 입후자를 들일 힘이 있기 때문이었다.¹²⁾ 생가로서도 아들을 입후시켜 보다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문중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거나, 입신양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맏아들에 대한 입후 역시 종가를 중시하는 이념적 배경과 더불어, 이러한 현실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맏아들을 입후하는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장자 입후는 종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허용되는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우선 입후자의 조부모가 죽은 양부모를 대신하여 입후를 허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인데, 양부와 생부가 모두 허락하여야 한다는 법전 조항뿐만 아니라 장자는 계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도 저촉되므로 이는 국왕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17세기에 등장한 사례에서는 생부(차자)와 양부(장자)가 형제지간이었는데, 장자가 아들이 없어 이미 차자의 아들을 입후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상태에서 장자가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조

12)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입후 양상과 전략적 계자 선택 - 안동김씨 문중공과, 연안이씨 관동과, 진성이씨 퇴계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304쪽.

부모가 죽은 장자(양부)를 대신하여 예조에 입계하였다. 이 경우는 조부모와 친손자의 관계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도 통용되는 적손증중(嫡孫承重)의 원칙에 부합하는 셈이었다. 반면 양부모가 사촌의 장자를 입후시켜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허용되었다. 신하들은 법전에도 저촉되는 동시에 고례(古禮)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국왕이었던 인조는 공신 집안이라는 점과 조부 이상의 제사를 봉행한다는 중요성을 내세워 장자를 입후하는 일을 허가하였다. 이후에는 장자를 입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장자를 입후하는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높지 않았다.¹³⁾ 이 연구만을 토대로 장자 입후가 드물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세기에 장자를 입후한 경주김씨 학주공파의 사례를 살펴보자.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 1602-1654)은 증조부인 김연(金堧 : 1494-?)대부터 서산에 세거한 경주김씨 가문의 일파로, 소현세자빈 강씨의 옥사가 온당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강씨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효종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후일 송준길과 송시열 등의 건의로 신원·복권되어, 김홍욱의 자손들은 송준길과 송시열 문인들과 정치사회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족보와 현전 고문서자료를 토대로 장자 입후 사례를 살펴볼 단서는 두 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김홍욱의 2자인 김계진(金季珍 : 1646-1709)의 후손으로, 충남 보령으로 이거한 김상덕(金商憲 : 1852-1924)이 장자를 입후시킨 경우를 살펴본다. 김상덕은 1888년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직각(直閣)과 승지, 대사성, 청국 천진 주재 공사와 인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한말에는 민종식 등과 함께 흥주의병을 일으켰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는 보령에 칩거하였다.

김상덕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독자인 김민제(金敏濟 : 1872-1933)를 삼

13) 고민정, 앞의 논문, 2013, 293~298쪽. 이 논문에서 활용한 『별계후등록(別繼後騰錄)』에서 장자 입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중형(6촌)이자 김계진 가계의 종손인 김상봉(金尙鳳)에게 입후시켰다. 김민제는 2남을 두었는데, 장남 김종원(金宗元 : 1898-1929)은 양가의 종통을 계승하였으며, 차남 김정원(金定元 : 1906-1973)은 친가인 김상덕 가계를 승증하였다. 이 입후에 대한 입안 등은 남아 있지 않고, 단지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장남, 그 가운데서도 독자를 입후하는 것은 형제가 있는 집안의 장남을 입후하는 것보다 조정의 허가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웠다. 따라서 입후를 입안으로 공인받기보다는 문중의 양해 아래 입후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후에는 생가와 양가 모두의 동의를 필요한데, 김민제가 태어난 高宗9년(1872)에는 김상봉의 처가 모두 사망한 이후였다. 김민제가 가문으로 돌아가는 김정원은 족보에 ‘본가로 돌아가 생조(生祖)의 제사를 받든다’¹⁴⁾고 기록하였다.

독자였음에도 입후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장자 입후의 사례를 연구한 고민정은 쉽사리 허가받지 못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생가와 양가가 장자 입후에 동의하는 이유를 ‘선대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생부는 장자로 하여금, 자신의 제사보다 선대를 승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양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장자 입후를 승인할 때, 정자(程子)가 ‘장자는 타인의 후사가 되지 못하지만, 만약 형제가 없고 조부를 계승하는 종(宗)이 끊어진다면 조부의 뒤를 이어야 마땅하다’고 한 주장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¹⁵⁾

그런데, 직각종택 소장 고문서자료에서, 흥미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 상소문의 초안을 잡은 소초인데, 장자 입후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궁할 때 하늘을 부르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이치이고, 이플 때 부모를 부르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만약 두려워해서 비천한 신의 마음을 알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아서 스스로 하늘의 조화

14) 『경주김씨학주공파세보』(2000), 473쪽.

15) 고민정, 앞의 논문, 2013, 302쪽.

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비천한 신하들에게는 하늘이자 부모입니다. 신에게는 매우 절박한 사정이 있어 우러러 성상의 귀에 들리게 하여 자애로운 은택을 입고 싶었으나,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다 보니 이렇게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은 병이 날로 깊어져 더 이상 낫출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감히 머리를 들어 부르짖으며 간절한 속마음을 전하오니 성상께서는 자애로이 굽어 살펴 주소서. 신은 본래 팔자가 좋지 않아 험혈단신이었는데, 겨우 두 아들을 얻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종형 전관서 ○○는 신의 사친(四親) 종가인데, 후사가 없어 신의 큰아들 ○○를 양자로 삼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 첩의 아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례(典禮)를 살펴보니 이는 도리어 변통(變通)일 뿐입니다. 신이 『의례』 「전」을 살펴보니 “어떠해야만 종자(宗子)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지자(支子)라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에는 “지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집안의 적자(適子)는 마땅히 스스로 소종(小宗)이 되어야 하므로 지자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성인이 천리를 본받아 인륜을 돈독하게 한 원칙입니다. 『통전(通典)』에서, 어떤 이가 허맹(許猛)에게 문자 대답하기를 “소종(小宗)에 지자가 없으면 대종(大宗)은 저절로 대가 끊어지게 된다. 양자로 갔던 사람은 의(義)에 따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자로 갔던 아들이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신의 선조이신 문원공 ○○께서 편찬하신 『의례문해(疑禮問解)』에 “양가의 아버지들이 서로 상의하여 파계(罷繼)하고 본가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률(禮律)과 사세(事勢)를 바탕으로 옛 사례를 참작하여 처리한다는 의논입니다. 또 『경국대전』 ‘입후(立後)’ 조에는 “적처(適妻)나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비로소 양자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천을 통틀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아! 신은 본래 전례에 어둡습니다. 당초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허락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理)를 수궁하면서 의(義)를 손상시킨 일입니다. 지금 종형은 이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경국대전』을 준용하면 마땅히 가문과 제사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과 종형은 옛일을 돌아보고 현재 법도를 준수하기로 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

습니다. 신의 큰아들은 장차 돌아와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나갈 것인데, 이것은 신에게 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종형과 신에게는 이미 대종이 저절로 끊어질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의 큰아들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실로 선조들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신이 말한 “양가의 아버지들이 서로 상의하여 본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전을 위반하는 죄를 면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법을 준수한다는 미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을 동시에 구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입니다. 종전에 여러 신하들이 이런 정황에서 사정을 아뢰어 허락을 받았으니 의거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신의 사정 또한 어찌 슬픔과 근심을 머금기만 하고 한번 부르짖지도 앓으면서, 자식처럼 바라보는 성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은혜를 엮으려 비오니 더욱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 그리고 해당 관청에 전례(典禮)를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시어, 제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정체(正體)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절초보음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프고 간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¹⁶⁾

이 자료는 수집된 이후 최근까지, 김상덕의 증조인 김면주(金勉柱) :

16) 『고문서집성』 8(광주안씨, 경주김씨편),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1~302쪽. “伏以窮而號旻降衷之常理也, 痛而呼父反本之大情也. 苟以嚴畏莫訴微私則, 是猶肖翹喘螟而自外於造化之天也. 惟我聖上之於賤臣天也父也. 臣竊有情理之萬萬迫切者輒欲仰徹 絀纏冀蒙憫覆之澤, 而忱畏喘喘延仍稽遲. 今臣拘馬之疾日深前日則, 不可以復有緩矣. 茲敢仰首鳴號冒陳血懇惟 聖慈俯垂憫察焉. 臣本命途不善隻身單子僅有二子以至成角矣. 而臣之從兄前判書臣○○即臣之四親宗家也, 以其無嗣取義臣之長子○○已多年所. 今幸有其妻子而成立. 則揆以典禮抑有變通爾. 臣謹按儀禮傳曰, 何如而可以爲人後支子可也. 疏曰, 支子可也者以他家適子當自爲小宗故取支子. 此則古聖人則天理教人葬之經法也. 又通典, 或問許猛答曰, 小宗無支子大宗自絕矣. 出後者於義得還. 此則出子當還證據. 而昔臣先祖文元公臣○○所纂疑禮問解中, 兩家父相議罷繼歸宗云者. 卽以禮律事勢參酌古例而處之議也. 又國家大典立後條曰, 適妾俱無子然後方許立後. 此則我 聖朝通貴賤不刊之闕和也. 嗚呼, 臣本昧於典禮. 當初以長子許爲祖後, 不恤嗣嗣卽乃肯, 理而傷義者也. 今以從兄臣則既有親生妻子. 此子當准 國典承緒承祀者也. 故臣從兄弟稽古遵今兩論歸一. 臣之長子將還嗣臣之嗣宗, 此事非臣之無支子而然也. 從兄臣既無大宗自絕之憂, 則臣之長子當還實有合於先祖. 臣所云兩父相議歸宗之例, 而一則免違越聖經之罪, 一則成格遵 國典之美. 所謂求之天理人情而各得其義者也. 從前廷臣之遭此等情界者蓋多陳乞蒙允班班可據, 則今臣情地豈容銜此愆恤而不一仰籲以冀 聖上子視之恩哉. 伏乞 聖慈曲加矜諒 特賜處分, 仍 命該院照典施行, 俾臣繼嗣之宗還得正體之完, 則臣雖生死限結無以圖報萬一也. 臣無任悲切祈懇之至.”

1740~1807)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¹⁷⁾ 김면주가 아들을 두지 못하여, 純祖5년(1805) 김노석(金魯錫, 초명 慶錫 : 1789~1840)을 입후하였기 때 문이다. 그런데 김노석은 김면주의 조카가 아니라 10촌 이상 멀리 떨어진 족형(族兄)인 김사주(金師柱)의 둘째 아들이었음을 계후입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⁸⁾ 즉 위의 소초는 김면주의 입후와는 무관한 문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된 사안일까? 경주김씨 학주공파 직각종택 소장 고문서 가운데 입후와 관련된 사례는 호구단자 1건이 더 있지만, 그 자료는 직각종택의 호구단자가 아니라 학주 김홍욱의 장자인 김세진의 후손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호구단자의 내용 역시 위의 소초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소초에서는 종형에게 장자를 입후하였으나, 종형의 첩자가 장성하였으니 첩자로 하여금 종형의 가계를 계승케 하고 입후한 자신의 장자를 파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내용을 살펴보면 “昔臣先祖文元公臣○○所纂疑禮問解”라는 대목이 있어, 소초의 원작자는 문원공 김장생의 후손임을 짐작케 한다. 즉 경주김씨가 아닌 광산김씨 가문에서 파계를 요청하는 상소문의 초안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 경주김씨 직각종택에 입수된 것이다.

아마도 직각종택 후손이 입후의 파계를 고민하였고, 그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수소문하여 소초를 등사하여 보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각종택 종손 가운데에서 입후하거나 입후를 보낸 사례를 찾아야 할 터인데, 앞에서 언급한 김민제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여지가 있다. 김민제는 김상덕의 장자이자 독자이다. 그런데 삼종형이자 고조부를 봉사하는 김상봉 가에는 적자가 없었다. 소초에서 언급한 사친종가(四親宗家)에 장자를 입후하였다는 내용과 김상덕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다. 장자이자 독자는 계후입안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사례이다. 따라서 상소를 올릴 경우 파계하거나, 애초에 허가를 얻지 못하고 사사료이 입후한 사례이므로 입후가 무산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입후를 파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지 문중 내에서 김민제의 입후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

17) 『보령 경주김씨 기탁전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46쪽.

18) 『고문서집성』 8(광주안씨, 경주김씨편),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5~306쪽 참고.

이었는지, 또 다른 내막이 있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명확히 해명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조선후기에도 첩자와 적자의 승중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첩자에게 가통을 계승케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적서차별이 공고했다고 여겨지는 17세기에도 첩자의 계승과 입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였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첩자가 있는데도 적자 후손을 입후한 것에 대해 첩자가 반발하거나, 입후하려다 첩자 계승을 결정하자 입후 후보자가 반발한 경우도 있었다. 법제적으로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첩자가 있더라도 다른 집안으로부터 적자를 입후하기를 원한다면, 경우에 따라 수용되곤 했다. 즉 조선후기에도 첩자가 있는 집안에 입후하는 문제는 가문 내의 갈등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은 사안이었다고 한다.¹⁹⁾

소초를 작성한 광산김씨 문중, 그 가운데서도 문원공 김장생의 아들 김집(金集 : 1574~1656) 역시 첩자만 두었으며 적자를 얻지 못했다. 김집은 차남이었으나 형이 임진왜란중에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가계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김집의 부인 유씨가 사망하자, 아버지 김장생은 아들에게 재혼하여 적자를 얻도록 권하였다. 그런데도 김집은 재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제사를 서자에게 계승시켰다. 대신 아버지와 그 윗대의 가계계승권은 적자를 둔 동생에게 넘긴 사례가 있다. 매우 독특한 사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지지를 얻고 있다. 우선 김집이 고례(古禮)에 입각한 예학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서자가 있는 자신의 가계는 입후하지 않은 채 동생에게 가통을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병이 있던 적처를 대신해 집안 대소사를 꾸려나간 소실 이씨(울곡 이이의 서녀)와의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 소초를 작성할 즈음에는 광산김씨 집안에서도 서자 승중보다는 적자 입후를 선호했다는 점과, 계후입안을 받지 않고서도 생가와 양가 아버지의 합의만으로 장자를 종가에 입후하는 경우가

19) 고민정,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2016, 196~197쪽.

20) 한기범, 「17세기 서얼의 종법적 지위」,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2, 135~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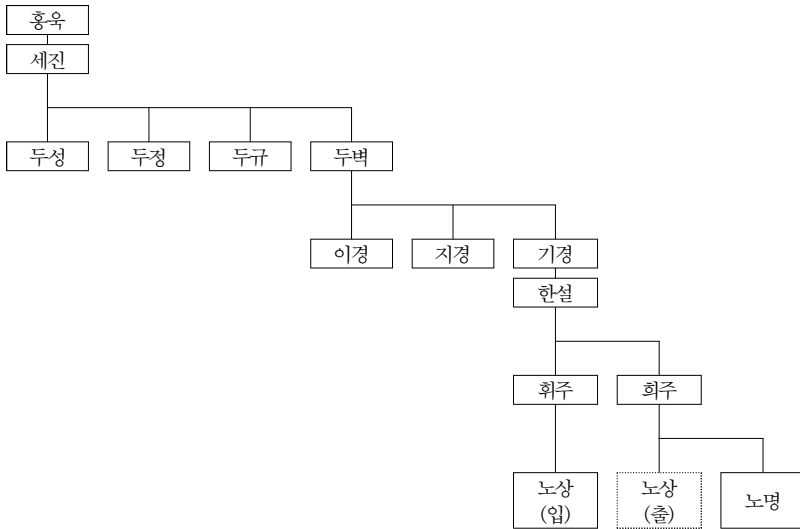
있었던 듯하다. 또한 입후를 둘러싸고 문중 내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도 분명하다 하겠다.

광산김씨 집안의 입후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그 시기와 사례를 비정한
 후에야 보다 심화된 논의가 가능하겠으나, 일단 여기서는 경주김씨 학주공파
 의 김상덕이 입후 문제에 참고하기 위해 이 소초를 구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19세기에도 첩자의 승중과 입후 여부를 두고 문중 내에서 여
 러 가지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해도 무방할 것이
 다. 입후한 자식인 김민제가 김상덕의 장자이므로 법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적자 우선의 가계계승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고했다면, 서자
 에게 승중시키고 입후를 파계시켜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족보상으로는 입후가 파기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
 을 근거로 입후 문제를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적서와
 입후 문제를 재고해 볼 단서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호구단자로 살펴본 입후의 양상

여기서는 19세기 경주김씨 학주공파 후손들의 입후 시기와 인식에 대해,
 호구단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문은 경주김씨 학주공파 가운데 김
 홍욱(金弘郁)의 장자 김세진(金世珍 : 1621~1686)의 후손이다. 현재는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2리에 세거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대교리(大橋里)로
 불렸고 현재도 ‘한다리 김씨’로 통칭될 정도로 지역의 명문가로 손꼽힌다. 그
 리하여 이 일대에는 적지 않은 학주공파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
 데 김세진의 4자 김두벽(金斗璧 : 1658~1724) 계열의 호구단자 자료를 분석
 하면, 19세기 충청도 경주김씨 가문의 입후에 관련된 양상을 조금 상세히 살
 필 수 있다. 김두벽의 셋째 아들 기경(起慶 : 1684~1745)은 한설(漢雪 :
 1727~1774)을 입후하였고, 한설은 휘주(翬柱 : 1753~1785)와 회주(羲柱 :
 1762~1824) 두 아들을 두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김휘주와 김희주 가계 사이의 양자 입후 양상이다. 장자인 김휘주가 아들을 두지 못하여 동생인 희주의 장남 노상(魯相 : 1784~1835)을 입후하였다. 아래의 가계도만으로 보자면, 차남 노명(魯命 : 1799~1867)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를 입후시켰으니 다소 어색하게 보인다. 서산과 보령 일대에 세거하는 경주김씨 학주공파 후손들이 소장한 고문서 자료 가운데, 계후입안은 김홍욱의 차남 김계진(金季珍 : 1646~1709)의 4대손 김면주(金勉柱 : 1740~1807)가 족질 노석(魯錫 : 1789~1840)을 입후할 때 받은 것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머지 입후 양상은 족보와 호적자료를 토대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가계도〉 서산 대교 경주김씨 학주후손가 영유공(永柔公)파 가계

입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여럿 밝혀진 바와 같이, 족보자료는 입후의 관계는 알 수 있지만 언제 입후하였는지, 생가와 양가의 관계는 어떠한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호적자료가 풍부하여 족보와의 통시적 비교 연구가 가능한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친자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며 가급적 입후를 미루다

가 자신과 부인의 연령상 적자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친조카나 당내친 가운데 입후에 적합한 차남을 두고 후보자가 어느 정도 연령에 달하여 장성할 것이 분명해지면 입후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입후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입후를 위한 절차를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양부가 사망하여 사후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²¹⁾ 만일 선불리 입후하였다가 친자가 탄생할 경우, 집안 내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성촌락이 형성되는 17세기 이후에는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촌수의 후손을 입양하여, 문중이나 친척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하였다.

그러하여 실제로 입후하는 경우에는, 양부가 사망한 뒤에 양모의 의사를 친척이나 문중에서 문서로 작성하여 입후 허가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한 양모가 젊은 경우, 문중 내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연령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입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나이가 젊을 때 입후한다면 양모 자신보다는 문중 어른들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양모마저 입후를 들이기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양가의 부모를 대리하여 가까운 문중 친척들이 입후를 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입후자의 연령은 갓 성년이 된 20대 초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²²⁾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던 조선시대라 하더라도 유아사망률이 높은 연령을 무사히 넘기면 성년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년에 이르면 문중 내에서도 입후자로서 입지를 다져 나가기에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서산 경주김씨 김휘주 집안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휘주 호구단자 가운데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은 正祖9년(1785) 33세 때의 것이다. 당시 김휘주는 부인이 사망하였고, 어머니와 동생 2명, 제수 1명과 함께 호적에 기록되었다.²³⁾ 그런데 김휘주는 이 단자를 작성한 해 말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입후자 김노상이 김휘주의 가계를 계승하였음을 입증하는 호구단자는 純祖31년(1831)의 것이 가장 빠르다.²⁴⁾ 이 호구단자에 아

21) 권내현, 「조선 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54~58쪽.

22) 권내현, 위의 논문, 61쪽.

23) 『戶籍1』, 『고문서집성』 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54쪽.

버지 김희주, 생부 김희주가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식년인 純祖34년(1834) 호구단자부터는 생부의 이름이 사라지고 양부인 김희주만이 기록되었다. 당시 김노상의 호적에는 처와 맏아들 우희, 며느리와 둘째아들 서희가 등재되었다.²⁵⁾

그렇다면 김희주가 사망한 正祖9년(1785) 이후부터 김노상이 입후하는 純祖31년(1831) 사이에, 입후자 김노상은 어느 호적에 기록되었는가? 바로 생부인 김희주의 호구단자에 맏아들로 기록되었다.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적자료는 正祖9년(1785)부터 高宗7년(1870)까지 19점인데, 그 가운데 正祖16년(1792)부터 純祖21년(1821)까지의 호구단자에 호수(戶首)로 등재된 이는 생부 김희주였으며, 김노상은 15세가 되는 正祖22년(1798) 호적부터 등재되었다.²⁶⁾ 즉 김노상은 양부 김희주의 사망 직후에 입후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純祖31년(1831) 호구단자부터 생부와 양부를 기록하였다.²⁷⁾ 현전하는 호적자료 가운데 1821-1831년 사이의 3개 식년 자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김노상의 입후 시기는 일단 1820년대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입후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김노상이 입후되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다. 김노상은 正祖8년(1784)에 태어났기에, 양부 김희주의 생전은 물론이고 사망 직후에 입후되는 것조차 너무 어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후는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노상이 10대 중후반까지 무탈히 성장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따라서 입후자가 없었던 正祖9년(1785)부터 김노상의 입후가 완료될 때까지는 동생 김희주가 가계 계승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위의 추정대로라면, 김노상이 김희주 가계로 입후한 것은 그의 나이 40대 시절이었다. 입후 연령으로 가장 선호했다던 20대 초반을 훨씬 지나

24) 『戶籍9』, 『고문서집성』 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65쪽. (『고문서집성』에서는 해당 호적을 1821년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된 간지와 등재 인물의 연령을 비교하면 1831년이 정확하다)

25) 『戶籍10』, 『고문서집성』 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66쪽.

26) 『戶籍4』, 『고문서집성』 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58쪽.

27) 『戶籍9, 戶籍10』, 『고문서집성』 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765~766쪽.

장년에 다다른 시기에 입후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생가인 김희주 가문의 사정 때문이다. 김희주에게도 김노상은 장자였다. 김희주의 차자인 김노명은 正祖23년(1799)에야 태어났다. 형 김희주가 맡았던 가문의 봉사자 역할을 대신했을 김희주 역시 장자이자 독자인 김노상을 입후시킬 수는 없었고, 자신의 슬하에 차자가 탄생한 뒤 그가 장성하여 성년이 되길 기다렸다가 장자를 입후시킨 것이다. 족보자료를 토대로 보면, 계후자 김노상은 純祖12년(1812)과 純祖15년(1815)에 각각 득남하였다. 김희주의 차남이자 가계계승자인 김노명 역시 純祖24년(1824)에 아들을 얻었다.²⁸⁾ 1820년대에 김노상의 입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과 연계시켜 간단히 추론해 보자면, 입후를 보낼 예정인 김희주의 가계가 안정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명백해 진 시점에 장남인 김노상을 김희주 가계에 입후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계후입안과 같은 자료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차남 대신 장남을 입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양모가 되는 김희주의 아내 전주이씨는 남편보다 3년 먼저 타계하였기 때문에, 양모의 의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희주와 문중 성원들이 합의한 결과일 공산이 크다.

즉 김희주-김희주 가문의 장자 입후 양상을 통해, 4대봉사를 주관하는 장손가라 하더라도, 계후자가 마땅치 않거나 동생들이 입후시킬 만한 후사를 낳고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입후를 미루고 동생이 가계계승권을 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후의 시기는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사정을 모두 살펴 결정하였음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족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입후의 실상으로, 호구단자와 호적대장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후 사례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8) 『경주김씨학주공파세보』(2000), 388쪽 및 397쪽.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18~19세기 기호지방의 유력한 사족이었던 경주김씨 학주공파 소장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조선후기 입후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본래 조선의 법제상 입후는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울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첩자가 있는데도 입후하거나, 남의 장자(長子)를 입후로 데려오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경주김씨 학주공파 가문에서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후 양자가 있었으며 장자를 입후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장자 입후 사례를 통해, 양가와 생가 사이의 갈등 요소가 잠재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첩자의 가계계승도 입후와 더불어 가계 단절을 막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구단자와 족보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입후의 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후에 있어서 양부 사후의 공백이 오랫동안 이어지더라도, 생가의 가계계승이 명백해 진 다음에 입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종손의 자리를 동생이 오랫동안 대신하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가까운 촌수(친조카)에서 입후하는 것을 양쪽 집과 문중에서 선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당내(8촌)의 범위를 넘으면 기제사 등의 통상적인 문중의례로는 알 수 없는 인물을 입후해야 한다. 이는 평소에 생가의 됃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중원들 역시 동성촌락에 세거하던 가계가 아닌 낯선 집안의 후손을 종손으로 받아들이는 부담이 생기고, 생가와 양가 사이의 알력이라도 발생한다면 친족집단 내에서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후 후보자와 시기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입후는 단순히 족보상의 가계계승을 단절시키지 않는 이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중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결부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 참고문헌

1. 자료

『經國大典』.

『경주김씨학주공파세보』(2000).

『고문서집성』8(광주안씨, 경주김씨편),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령 경주김씨 기탁전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고문서집성』86(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 논저

고민정,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14.

_____,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한국사학회, 2015.

_____,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_____, 『계후입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7.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_____,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한기범, 『17세기 서얼의 중법적 지위』,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입후 양상과 전략적 계자 선택 - 안동김씨 문정공파, 연안이씨 관동파, 진성이씨 퇴계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_____, 『『계후등록』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A Case Study on the Adoption of Yangban Family in Chungcheong-do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the Archives of Hakjoo Lineage in Gyeongju Kim Clan –

Lee, Dae Hwa*

Originally, Joseon's legal adoption was possible only when a person who did not have a son from both a lawful wife and a concubine adopted a son who was not a firstborn son among the sons of family relatives as an adopted child. However, in the Joseon Yangban (Aristocratic) class after the 17th century, as the no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legitimate child and the bastard was strengthened, even though a concubine already had a son, there was a trend of accepting a legitimate child from the same family as an adopted child or adopting the eldest son. As this aspect wa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Gyeonggukdaejeon*”, special permission from the king was required. According to studies so far, to be recognized as such an exception, it is said that the social status of the adopted family was an important factor. This article based on old documents owned by Gyeongju Kim Clan Hakjugong-pa, one of the prestigious Giho-region families, reviewed cases related to adop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nd specific cases were considered.

Like many families at the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is family also had an adopted child after death or adopted a firstborn child, etc. In particular, through the case of adoption of a firstborn child,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f conflict between the adopted family and the birth family in the future, up to the 19th century, the possibility that the family succession of concubine children was also considered as a means to prevent the discontinuation of the family was confirmed. In addition, by comparative review of family register data and genealogy, there were not a few cases of adoptio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and even if the absence of the successor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lasts for a long time, it was also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y preferred adopting descendants of close relatives, such as their nephews. This intention is proved by the fact that the family waited for his younger brother's second son to grow up before adopting him while the deceased father's role has long been replaced by his younger brother. In other words, since the actual cases of family customs such as adoption in the late Joseon appeared in very diverse aspects, more case studies are needed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customs of the Joseon era on adoption.

Key words: successor naming, adopted child, family custom, family succession, family register